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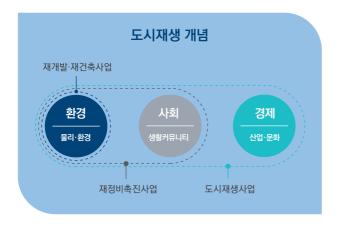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 분석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약 50조원을 전국 500곳에 투자하여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을 다소 미흡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지역 지정기준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 외 국가균형발전사업들의 예산 감소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 및 그 한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에 5년간 약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국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을 살펴볼 필요





Ⅰ. 도시재생 추진 방식

분석결과

1. '도시'에 대한 정의 마련 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대상인 '도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인 '도시지역'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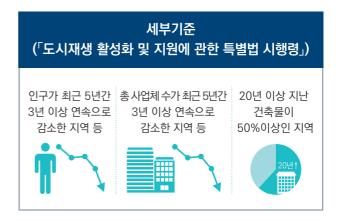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저한 인구 감소', '산업 이탈' 및 '주거환경 악화' 중 2개 이상 발생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연속적 인구 감소', '총 사업체수 감소' 및 '노후 건축물 증가'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들은 지정기준 요건과 미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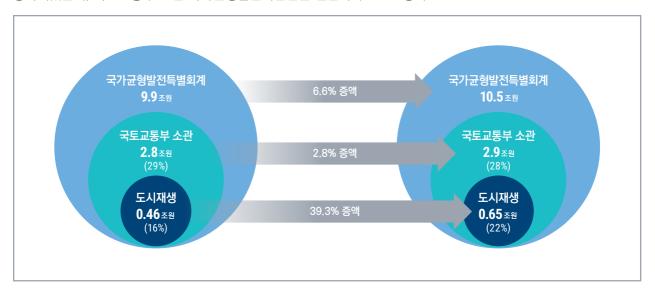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형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재설정할 필요

Ⅱ. 도시재생 예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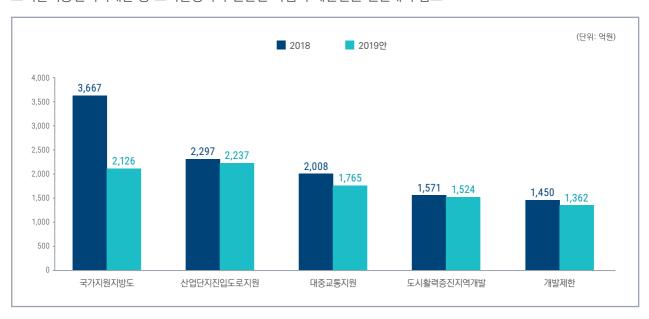
1. 도시재생 예산체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뉴딜 관련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3% 증가되었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예산안은 전년대비 2.8% 증가



2. 일부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안 감소

도시재생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국가지원지방도, 대중교통지원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 도시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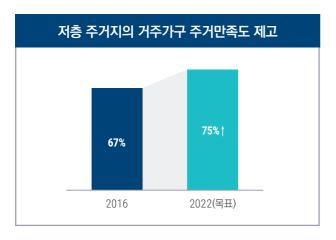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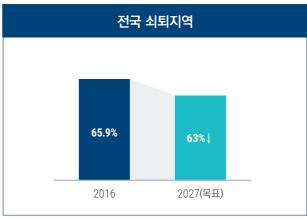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증가율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증가율보다 낮으므로, 도시활성화와 연관된 사업 예산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Ⅲ. 도시재생 성과관리

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성과관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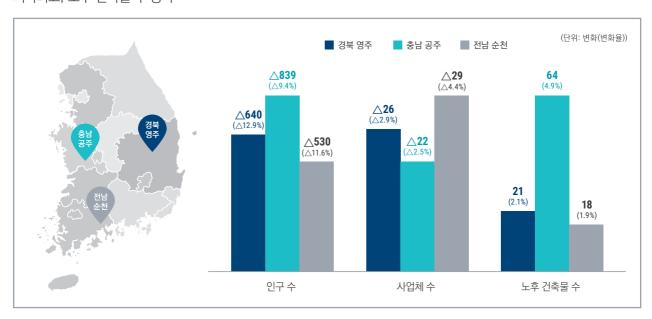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에 따라 저층 주거지의 주거만족도는 향상되지만, 2027년에 전국 63%가 쇠퇴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





2. 도시재생선도지역 성과

도시재생의 목적인 '쇠퇴현상 해소'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결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노후 건축물 수 증가



개선방안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 및 그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반영하고,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